

제 385 호

1973. 7. 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덕 시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 진 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 조 례
 - 제 787 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개정조례..... 3
- ◎ 규 칙
 - 제 1317 호 서울특별시 두레가전물점리 사업
 - 보조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4
- ◎ 고 시
 - 제 113 호 방화지구기적승인..... 7
 - 제 114 호 도사제 회시 설일부변경 및 지적변경승인..... 7
 - 제 115 호 일단의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의인가수가..... 8
- ◎ 사 령 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833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병원설치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
1973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787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설치) ①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그 질병을 진로하기 위
하여 시립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병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 2 조 (원장) ①병원에 원장을 두
며 원장은 지방의무부 기감으로 보
한다.

②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
한다.

제 3 조 (조직) ①병원에 서무과, 약
제과, 간호과와 진료에 필요한 과
() , 실을 두며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약제과장은 지방약
무기좌, 간호과장은 지방간호기좌로
보한다.

②과와 진료에 필요한 과 및 실
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공무원의정원) 병원의 수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 5 조 (사용료 및 수수료) ①병원
에서 진료를 받는 사내 의자기는
사용료와 수수료로 징수한다.

②선형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

제 6 조 (진료허가) 시장은 육질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민이외의 자의 진료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리사업 보조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7월 5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317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리
사업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리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급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은 조례 제 2 조 제 1 호에 규정된 건물임이 무허가 건물대상에 등재되었거나 재산세의 납부등으로 공무상 확인된 건물이어야 한다.

② 조례 제 3 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이 의하여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세입자가 1세대 뿐인 경우
- 있는 당해 전세입자

2.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전세입자. 다만 주된 전세입자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입자 및 정리 당시의 거주자 전체

제 3 조 (지급대상에서의 제외)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동일인 (동일 가족내의 타인도 같다)이 2동 이상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입자로 되어 있을 경우 1동 이외의 무허가 건물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신물의 건축이 가능한 자기소유 토지상의 무허가건물
3. 타인 소유토지 (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대책을 제공한 무허가건물

제 4 조 (보조금지급액)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액은 무허가건물 1동당 10만원으로 한다.

제 5 조 (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6 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관할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축보조금지급처방침」을 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조례 제 3 조 및 이규칙 제 2 조와 제 3 조에 의하여 작성한 지급대상자 명부
2. 향족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장사진

제 7 조 (보조금지급결정의 홍보) 구청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사항을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리야 한다.

제 8 조 (보조금의 지급신청)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지급 신청서 (서식제본 1부)
2.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3. 지급대상자의 전담증명

제 9 조 (보조금의 지급)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에 부응하여야 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 지급 명세표를 작성하고 경수까지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보조금지급 대상자가 특별히 사유 없이 보조금의 신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보조금의 일부선지급)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조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액의 3분의

11-6 제 385호

시

보

1973.7.9.

한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
건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보조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
비서류는 제 8 조 각호에 의하여 처
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기명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남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조금지급대
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
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절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사건변경에 따른 결정 취소) 제 6

부

칙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이 .규칙은 197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제 1 호

보 조 금 지 급 신 청 서

1. 대 상 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2. 철거위치 :

구

동

번지

3. 철거일시 :

년

월

일

4. 신청액 :

원

1973

신 청 인 인

○ ○ ○ ○ 구청장 귀하

첨부 : 1. 인감증명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제 113 호
 방화지구지적승인 고시

1. 건설부 고시제 215 호 (73.6.5) 로 결정한 서울도시계획 방화지구 (시공시장)의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 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7. 9.
 서울특별시 관

1. 방화지구 결정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방 화 지 구	영등포구 시공동 364부락	2,640㎡	시공시장용지

별첨 : 도면도시와 같은(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함.

◎서울특별시 고시제 111호
 도시계획시설 일부변경및지적변경승인

1. 당시판내 도시 계획시설 일부변경 승인 도시 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 및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7. 3.
 서울특별시 관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가. 개거일부변경(복개) 조서

구 분	계 획	복원	인 광	면 적	기	삼	총	비 고
기 경	복 개	3,5	287	1,004	용역로 6가	용역로 6가	복개수	상가 및
변 경	"	"	"	"	18-79	18-27	구차장시설복거후	도로시설

나. 주차장 시설 취소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주차장 (공지)	율리로 5가 18, 79 앞	1,003	복개후 주차장 (125.4미터X8미터)
변 경	도 로	"	"	복개후 도로 (125.4미터X8미터)

◎ 서울특별시고시제 115호

일단의 공업단지조성사업
실시지침인가특가고시

1. 서울시고시제 55호(73.4.24)로 일단의 공업단지조성사업실시지침인가된바 있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제3단지에 대하여 사업구역내 사용토지로써 시행자인 수출공단이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토지와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6 . .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외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리봉동 326-외 609외 경기도 시흥군 서면 갈산리 322외 40필

2. 사업의종류: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
명 칭: 한국수출산업공단 제3공업단지
시행면적: 378,600 평

3.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로동 188-5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최명립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착수: 73. 4
준공예정일: 74. 12. 31

5. 수용토는 사용할 토지 건물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지의 표시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의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권리과
독산동	649	답	920	서울영등포구 독산동 544	이경수				
가리봉동	504-2	구거	171	서울영등포구 구로2동 43-13	김홍희 김정남 김영선	서울영등포구 가리봉동 110-7	심선조		
"	518-18	"	179	"	"	서울영등포구 구로동 11	김중식		
"	515-12	"	19	서울성북구 동선동 1가 24	김수이 최표이	안성군안성면서리 145	김주이 김중		
"	515-18	"	99	"	"	"	"		
"	535-48	전	149	서울용산구 용운동 38-3	김정환			1962.2.27 압류	경기도
"	535-77	"	32	"	"				
"	535-78	"	1	"	"				
"	535-76	"	149	"	한경식				
"	535-49	"	36	서울영등포구 대림동 139-5	김진호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산리	252-1	잡	2121	서울중구 남대문로 2가 135-1	한국실업 회사	서울중구 남대문로 2가 145-2 日本水産物地区 西新堀 1丁目2	한국산업 은행 三井物産	1973.5.8 근저당권 1972.1.27 가압류 1972.7.4 가압류	한국산 업은행 신상 은행 한국 외환 은행
"	283-1	"	1764	"	"	서울중구 남대문로 3가 110	한국외환 은행	1968.2.2 지상권 1968.2.2 근저당권	한국외 환은행

6. 토지 또는 건물에의 소유자와 노지수용법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천황하표)
 7. 인가내용: 부속 인가로서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위원회

시 령

◎ 1973.7.1.

성북구(지하철과경중) 지방행정사 박병기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지하철과경중) 지방행정사 한호석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중우과경중) 지방행정서기 이강수
 중구 근무를 명함.
 영구(성동구과경중) 지방행정서기 정남수
 성동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도시개발소) 동대문구도시개발소 근무를 명함.

◎ 1973.7.2

관 광 과 지방행정사 박종필
 조경과 근무를 명함.

◎ 1973.7.4.

영 등 구 지방행정서기 선계홍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3.2.19 자(발령제 173 호) 정제(파면)

차관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강봉 3월에 처한다.

◎ 1973.7.5.

영 등 포 구 지적기원보 윤인상
 지방지적기원보에 임함.
 10 호봉을 감함.
 개량 2 과 근무를 명함.
 은 등 강 기 지방전기사 홍종석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구회정리 2 과 자방토목기원보 김상덕
 복직을 명함.
 6 호봉을 감함.
 개량 2 과 근무를 명함.
 숙 구 지방행정사 정이간
 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사 김주환
 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
 영 등 포 구 지방행정서기 박계택
 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서기 이, 한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서기 문동근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통계과 지방행정 주사보	강신익	개정 2 과 개정 1 제 3 에 포함.	
조경과 근무를 영함.		도복과 지방도복 (도복계장)	정재무
		남부건설사업소장에 포함.	
◎ 1973.7.6.			김상국
도시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김형식	차국외부거과 시노이 임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호봉을 승급.	
영동출장소 지방건축 사무소	김판섭	의약관 의등계장을 포함.	
건축과과전 근무를 면함.			
승무과 지방선거 (관리계장)	엄병호	◎ 1973.7.7.	
기전과장 직무대리를 영함.			정덕중
포상과 도복거과 (시설계장)	장인화	지방노동계원보 시노이 임함.	
도복과 도하계장 직무대리를 영함.		1호봉을 승급.	
남부건설 지방도복 사무소	조희철	지하에 건설본부 근무를 영함.	

서울특별시